

여성계 “낙태죄 전면 폐지” vs 종교계 “생명권 박탈 안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 결국 유지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에도,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토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임신 14주 이내인 경우 조건없는 낙태가 가능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허용 조건을 완화했지만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 낙태죄 관련 법조항은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정부는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형법 개정안에 신설, 처벌·허용 규정을 일원화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또 임신 24주 이내 강간·중간간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임신, 친족 간 임신, 산모 건강이 우려될 경우 등 기존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다만,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 실확인서’ 등으로 낙태를 시술받을 수 있고 심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시술 방법도 확대돼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낙태죄 관련 검거 건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6개월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 역사 뒤안길 사라질 듯 했다가 정부 신중한 입장... 법전에 남아

수는 총 3건(6명)으로, 2016년 1건(2명), 2018년 2건(4명)이 전부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점을 들어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의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응 엇갈려=당장, 광주·전남 여성계에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정부 입법예고안과 관련, “후퇴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법률로 전면폐지가 마땅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민우회 관계자는 “임신 기간에 따른 처벌 조항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정에 들어가는 등 실패가 증명된 것”이라며 “처벌이 아닌 여성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형태에서 전면폐지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활동가도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는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해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도 입법문을 내고 “정부의 입법예고는 여성의 안전과 권리훼손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신 기간과 상관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생명운동본부측은 낙태죄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낙태죄 완화와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생명운동본부 측은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반드시 지

켜야 할 의무”라며 “낙태죄가 완화돼 태아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역사=국내에서 낙태 행위로 처벌이 이뤄진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일본 형법을 조선에 적용해 1912년 시행된 ‘조선형사령’은 낙태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낙태를 시술한 의사·산파·약제사 등에게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해방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 법전편찬위원회가 내놓은 형법에도 낙태죄 조항이 포함됐다.

당시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형(여성), 2년 이하의 징역형(의료진)이었다.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특별법은 1973년에 ‘모자보건법’ 8조(현재 14조)로 제정됐다. 이 조항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암마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모자보건법은 일본의 ‘우생보호

법’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우생보호법의 낙태 허용 조항에서 ‘나방’을 ‘전염성 질환’으로만 바꿨을 뿐,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옮겨왔다. 그나마 일본 우생보호법은 낙태 허용 조건 가운데 하나로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1985년 대법원은 “의사의 낙태 시술은 사회 상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로 낙태죄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사회 전반에 일었고, 정부는 1987년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던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임신중절 시술을 69차례 했다가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는 2017년 2월 현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낙태죄는 이에따라 10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듯 했지만 정부는 현행 법을 유지하면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 낙태죄를 법전에 남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늘어지는 민사재판

광주지법 2년 넘긴 ‘농장 선고’ 상반기 181건 달해 서민 부담

광주지법 민사재판이 늘고 있다. 무려 2년을 넘겨 ‘농장 선고’된 민사 분야 사건(1심)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평균 재판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 소송 상당수가 서민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민생 사건’으로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이 7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이 최근 5년 간 매년 늘어났다.

광주지법의 경우 2년을 초과해 선고된 민사본안 1심 사건이 지난 2015년 195건에서 297건(2016년)→342건(2017년)→385건(2018년)→404건(2019년)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2년을 넘겨서야 ‘농장 선고’된 사건이 상반기까지 181건에 달했다는 게 김 의원측 분석이다.

광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평균처리기간도 매년 길어지는 양상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1심)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5년 전(4.9개월)에만 1심 법정선고기준을 지켰을 뿐 5.2개월(2016-2018)→5.4개월(2019년)로 길어졌고 올 상반기에도 5.6개월의 처리기간을 보였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현 의원 지적이다. 상소(항소·상고)심도 다르지 않다. 광주지법은 6.8개월(2015년)→7.3개월(2016년)→8.0개월(2017년)→8.3개월(2018년)→8.0개월(2019년)→8.4개월(2020년 상반기) 등으로 법정선고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보

장하기 위한 법정선고기간이 무색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김진에 의원은 “긴 재판은 일상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법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아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이 이자를 포함해 47억47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귀속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66건에 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추행 피해 중학생 사망 관련 동급생 3명 소년재판부 송치

경찰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남자 중학생이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광주일보 7월 17일 6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을 소년 재판부로 넘겼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같은 학년 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의제강제추행치상 등)로 A군 등 3명을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 8일

부터 19일까지 영광지역 또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B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 입원 3일만인 지난 7월 3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 재판부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민수당 도입 촉구 광주시농민회 회원 80여명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 가을 단체 단풍여행 어렵다 국립공원공단 대형버스 출입 제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가을 단체 단풍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단체 여행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공단 지역 주차장의 대형 전세버스 차량의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매년 단풍철이면 전국 유명 단풍 여행지 주차장은 등산객을 태운 전세·관광버스로 가득했다.

공단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체 여행객 대신,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도 단풍 절정기간 10~11월 단체 탐방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공단은 이에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내 피아골·연곡사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 간 대형차량 주차를 제한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임포·팔영 공영

주차장과 내장산(백암) 주차장도 오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일 간 대형 관광·전세버스 주차가 제한된다.

공단은 또 탐방로 및 밭집 지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하고 탐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자전광판, 안내판·깃발·어깨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